

요 약

- 현행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함
 -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있는데, 현행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이 중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법체계상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 이러한 취지에서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 보험업법에서는 공법적으로 모집종사자의 자격이나 영업행위 규제,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상법에서는 사법적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 체계에 의한다면,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제646조의2)에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 문구상으로는 보험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구체적인 권한을 규정한 기존 상법 조항의 방식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이에, 보험업법의 규정 내용, 학계에서의 논의, 보험 실무 등을 고려하여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보험료를 협상권 등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겠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모집종사자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상법상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개정 논의가 있고, 새로 시행된 금소법에도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업법, 금소법을 종합하여 모집종사자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겠음



1. 검토배경

-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¹⁾
 -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더불어 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에서는 현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보험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법에 명시적으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 받도록 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제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위 상법 개정안의 타당성 및 기타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 ③ (생략) 〈신설〉	제646조의2(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u>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⑤ ----- ----- 제4항까지의 ----- -----.



2. 현행법상 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가. 보험업법과 상법의 관계

-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정의, 등록요건,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감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1)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3. 19, 의안번호 제2108946호)

-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규율하는 공법(公法)으로서 국가가 보험회사 등을 어떻게 규율할지를 다루는 보험규제법이며,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을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함
- 보험업법에서 모집종사자에 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상법에서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내용은 보험계약에서의 사법적 권리·의무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로부터 보험료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 지체 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는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는 것임²⁾
 -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조항인 제646조의2는 2014년 상법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도 보험업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모집종사자의 자격, 영업행위 규제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의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정리되었음³⁾

나.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음⁴⁾
 -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의미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⁵⁾

〈표 2〉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별 정의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와 구분됨
 - “대리”는 보험대리점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효과가 보험회사에 직접 귀속되는 것임
- 보험중개사는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와 같으나, 특정한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불특정 다수를 위해 중개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보험설계사와 구분됨
 - “중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자나

2) 장경환(2009), 『상법 제4편(보험) 개정안상의 주요 쟁점조항의 검토』

3) 손해보험협회(2009),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총칙편)』

4)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5)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다.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규정

-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2014년 상법 개정 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함
 - 과거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나 이들에게 표시한 의사표시 등이 보험회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임
 - 위 상법 개정 당시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이유 등에 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으며, 당시까지만 하여도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비하여 보험중개사는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됨

〈표 3〉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조항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해서는 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보험대리상”⁶⁾),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의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임
 - 위 상법 조항에 따라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6) 엄밀히 말하면 상법상 보험대리상에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부여된 ‘보험계약대리상’과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없이 중개권만 부여된 ‘보험중개대리상’이 있음. 우리나라 보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보험대리점은 보험중개대리상으로 이해되나,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상을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리상으로 보고 다만 권한을 제한하여 보험중개대리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 상법상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

구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의 대리권	○	X
보험료 수령권	○	제한적으로 ○ (영수증 교부 시)
보험증권 교부권	○	○
고지 및 통지 수령권	○	X



3.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고려 사항

- 법체계상, 상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있는데,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이 중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 보험업법에서는 공법적으로 모집종사자의 자격이나 영업행위 규제,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상법에서는 사법적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 체계에 의한다면,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제646조의2)에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보험중개사에게 어떤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음
 -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보험중개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의 조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험중개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한(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의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의 유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보험중개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규정 내용, 학계에서의 논의, 보험 실무 등을 고려하여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예를 들어, 보험중개사가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하는 방안⁷⁾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보험업법규상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⁷⁾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보험중개사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라면 보험중개사도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⁸⁾
 - 예를 들어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회사가 가지는 것이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령권이 없지만,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라면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실무상으로도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는 보험중개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⁹⁾
 - 고지·통지 수령권이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의 경우에도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에는 보험중개사가 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임¹⁰⁾
- 또한 학계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협상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며, 이를 법상 명시하는 방안¹¹⁾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겠음

7) 다만,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2021. 3. 23. 삭제되었고(금소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게 됨에 따른 것임) 보험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음

8) 한기정(2019), 『보험업법』,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등의 권한을 위임 받는 것 자체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중개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즉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등이 없음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험중개사가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등을 위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실제로 삭제 전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9)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2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제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소법상으로도 보험료 수령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모집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이 허용됨(제2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0)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험중개사를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아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포함하여 모집종사자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현재 상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상법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험대리상’과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업법과 통일하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 실무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 및 통지 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¹¹⁾
 - 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 규율함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할 필요도 있음
 - 예를 들어 금소법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¹²⁾ 만약 상법에서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금소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이에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업법, 금소법을 종합하여 모집종사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결론

- 법체계상, 상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에게 어떤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보험중개사의 권한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보험료율 협상권 등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겠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상법, 보험업법, 금소법을 종합하여 모집종사자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11) 이성남(2014),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김창호(2020),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12) 금소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